

많은 먼지를 흡입해 기관지천식이 악화됨으로써 발작을 일으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이다

[주 문]

피고가 2001.1.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 망 조○○(이하 '망인')는 사무용품 제조업체인 서울 금천구 소재 (주)○○○(이하 '소외 회사')의 자재과 주임으로 근무하던 중 1998. 5. 28 14:40경 광명시 철산동 소재 광명○○병원에서 선행사인 기관지천식, 직접사인 급성 천식발작(추정)으로 사망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같은 해 7. 13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이하 '중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16일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중전 처분')을 하였다. 위 중전 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자, 피고는 같은 해 11. 19 위 중전 처분과 같은 이유로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지 아니하여 위 중전 처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 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이 기존 질환인 기관지천식이 있는 상태로 먼지가 많은 지하의 자재창고에서 자재 입·출고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1997. 1월경부터는 소외 회사의 자재과 직원이 감원되어 그 업무량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사망하기 10일 전부터는 평소의 담당업무 외에 지하에 있는 자재창고의 이전을 위하여 직접 위 자재창고에 있는 자재를 운반하면서 육체적 과로가 누적되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먼지를 흡입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기존 질환인 기관지천식이 악화됨으로써 급성 천식발작을 일으켜 사망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인정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의 3 갑 34 을 2 을 3의 1, 2 을 45의 각 기재, 증인 안○○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 광명○○병원장에 대한 각 감정축탁결과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의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2의 1 내지 3 갑 3의 각 기재 부분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망인의 경력, 업무내용 및 근무 환경

망인은 1993. 10.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사망 당시 까지 자재과 주임으로 근무하면서 자재 입·출고를

담당하여 왔으며, 평일 정규 근무시간은 08:30부터 17:30까지이나, 평소 07:30 전후에 출근하여 통상 하루 1~2시간 정도의 연장근무를 하였다.

소외 회사에는 3층과 지하에 각 자재창고가 있었는데, 망인은 위 각 자재창고를 일정기간 번갈아가며 근무하다가 사망하기 5~6월 전부터는 지하 자재창고에서만 근무하여 왔다. 위 지하 자재창고는 약 200평 정도 크기의 창고로써 평소 적치된 자재로 인하여 먼지가 많았으며, 환풍기가 5대 설치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고장으로 작동이 되지 아니하였다.

한편 소외 회사는 1997.1월경 부도가 나가게 되어 종전에 24명이었던 자재과 직원을 13명으로 감축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망인의 업무량은 약 2배 정도 증가하였다.

(나) 망인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

망인은 1963.4.3생으로 사망 당시 35세 남짓이었고, 기관지 천식으로 1995.9.23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광명○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등 같은 해 11.9까지 3차례에 걸쳐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며, 같은 해 11.1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기관지염 및 그 합병증의 치료를 위하여 휴직하였고, 그 후에도 1996년도에 1차례, 1997년도에 2차례에 걸쳐 기관지천식에 대한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사망하기 전인 1998년에는 3월부터 3차례에 걸쳐 ○○연합병원에서 기관지 천식으로 통원치료를 받았다. 또한, 망인은 평소 음주와 흡연을 하지 아니하였다.

(다) 망인의 사망경위 및 원인

망인은 사망 당일인 1998.5.28 오전 위 지하 자재창고에서 자재운반작업을 수행한 후 점심식사를 마쳤는데, 같은 날 13:20경 소외 회사의 1층 화장실에서 변기를 붙잡고 고통을 호소하여 동료 직원들에 의하여 곧바로 광명○병원으로 의식불명인 상태로 후송되어 기도 삽관, 약물투여 및 심폐소생술 등의 처치를 받았으나, 같은 날 14:40경 기관지천식의 악화로 인한 급성 천식발작으로 사망하였다.

②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바와 같이, 망인은 소외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먼지가 많은 지하 자재창고에서 직접 상·하차 작업을 수행하면서 자재 입·출고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소외 회사가 부도가 난 1997.1월 이후에는 소외 회사의 자재과 직원이 감원되어 망인의 업무량이 약 2배 정도 증가한 점,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인 1995.9월경부터 사망 직전까지 기관지천식으로 계속 치료를 받아온 점, 망인은 사망 직전 약 10일 동안 소외 회사의 자재 창고 이전을 위하여 통상적인 업무 외에 자재운반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위 자재운반 업무를 수행하던 중 기관지천식의 급성악화로 사망한 점, 기관지천식은 과로·스트레스뿐만 아니라 먼지 등에 의하여 악화될 수 있으며, 기관지 천식이 악화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소외 회사의 자재과에서 근무를 하는 동안 위와 같은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누적된 과로·스트레스 및 먼지 등으로 인하여 기관지천식이 유발되고, 그 이후 먼지 등이 많이 발생하는 근무환경에서 계속되는 과중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인하여 위 기관지천식이 급격히 악화됨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